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3

발의연월일: 2024. 7. 10.

발 의 자:김태선·장철민·박 정

김남근 · 강훈식 · 권칠승

윤종군 · 김영진 · 최기상

손명수 · 위성락 · 이해식

김주영 · 박홍배 · 정준호

이훈기 · 김영환 · 조 국

이기헌 의원(19인)

제안이유

산업재해는 규모가 크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발생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 재해예방의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나, 도입 이후 제출 건수가 연평균 6만건 이상으로 현재 행정인력으로는 검토 및 지도 관련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분석 된다면, 산업재해 발생원인 파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산업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산업안전공단에 조사표를 제출할 수있도록 한다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의 작성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자료를 활용한 산재예방사업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동종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업주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 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용노 동부는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감독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도 록 해 산업현장의 안전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승 인통계가 아닌 발생통계를 이용해 산업안전예방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원 및 전문교육사업을 통해 산재예방사업의 토 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3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② (생 략)	및 보고 등)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③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u>이 경우 고용노동부장</u>
	관은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
	하게 할 수 있다.